#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5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8.

발 의 자:고영인·김승원·김홍걸

김회재 • 박성준 • 윤관석

윤미향 • 이상헌 • 이성만

이수진 • 이은주 • 주철현

황운하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.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·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·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·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·재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복지지원 대상자 선정) ①	제14조(복지지원 대상자 선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1
	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여
	부를 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
	<u>라 소득·재산 등을 고려하여</u>
	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
	소득・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
	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
	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
	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
	결정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